

제253회충청북도의회정례회
2006.9.4 ~ 9.15(12일간)

심 사 보 고 서

- 충청북도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
폐지조례안

기획행정위원회

충청북도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 폐지조례안 심사보고서

2006. 9. 15.
기획행정위원회

I. 심사경과

가. 발의일자 및 발의자 : 2006년 8월 28일
충청북도지사

나. 회 부 일 자 : 2006년 8월 28일

다. 상정 및 의결일자

제253회 충청북도의회(정례회) 제1차기획행정위원회(2006.9.5)
상정,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, 질의·토론, 심사의결

II. 제안설명 요지

(제안설명자 : 자치행정국장 광연창)

1. 제안이유

회계관계 공무원의 재정보증을 「지방재정법 시행령」으로 정하도록 「지방재정법」이 개정됨에 따라 「충청북도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」를 폐지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충청북도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 폐지

Ⅲ. 검토보고 요지

(기획행정전문위원 연기봉)

- 본 폐지조례안은 지방재정법 제95조의 개정으로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에 대하여 조례로 정하던 것을 지방재정법 시행령으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폐지하는 것으로 이견없음.

Ⅳ. 질의 및 답변요지 : “생략”

Ⅴ. 토론요지 : “생략”

Ⅵ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Ⅶ. 소수의견요지 : 없음

Ⅷ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음

Ⅸ. 심사보고서 첨부서류

- 충청북도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 폐지조례안.

충청북도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 폐지조례안

의안 번호	20
----------	----

제출연월일 : 2006년 8월 28일

제출자 : 충청북도지사

1. 제안이유

- 회계관계공무원에 대한 재정보증을 지방재정법령에서 정하도록 관계법령이 개정됨에 따라, 충청북도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를 폐지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충청북도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 폐지

3. 의안전문 : 붙임

4. 관계법령 발췌 : 붙임

조례 제 20 호

충청북도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폐지조례안

충청북도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(조례 제2030호, 1993.3.26)는 이를 폐지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관계법령 발취

□ 지방재정법('05.8.4 전부개정-'06.1.1 시행)

제95조(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) ①회계관계공무원(「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 나목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를 포함한다)은 재정보증이 없이는 그 직무를 담당할 수 없다.
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정보증의 한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

※ 개정전 법률

第116條 (會計關係公務員의 財政保證) 會計關係公務員은 條例가 정하는 바에 의한 財政保證이 없이는 그 職務를 담당할 수 없다.

□ 지방재정법시행령('05.12.30 전부개정-'06.1.1 시행)

제138조 (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) 법 제9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 또는 공제가입 한도액은 1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범위 안에서 회계관직·책임범위 등을 감안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한다.